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36
----------	-------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박충권 · 김태호 · 이종배
김상훈 · 김성원 · 박성민
서천호 · 엄태영 · 백중헌
이달희 · 박수영 · 최보운
유용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사실의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가공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위작, 변작되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인 것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허위 또는 악의적인 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디지털 생태계와 인공지능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그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면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의 보전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지능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한다)을 이용한 결과물을 유통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표시(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의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제4호의4부터 제4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한 자

4의3.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3조의2(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의 보전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지능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한다)을 이용한 결과물을 유통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표시(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u></p> <p><u>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u></p>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4의2. ~ 4의6. (생략)

5. ~ 24. (생략)

④ (생략)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생성 사실
의 표시의 훼손, 위작 또는 변
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
시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한 자

4의3.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자

4의4. ~ 4의8. (현행 제4호의2
부터 제4호의6까지와 같음)

5. ~ 2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